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33,398,388	64,001,952
일반회계	1,803,711,680	54,111,350
특별회계	329,686,708	9,890,601
공기업특별회계	241,181,454	7,235,4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411,506	3,312,345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30,769,948	3,923,098
기타특별회계	88,505,254	2,655,158
교통사업 특별회계	25,045,682	751,370
장사시설특별회계	291,788	8,75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61,928	55,85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930,129	87,904
대지보상 특별회계	2,785,724	83,572
기반시설 특별회계	424,465	12,734
수질개선 특별회계	55,165,538	1,654,96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511,03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